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69

발의연월일: 2024. 11. 7.

발 의 자:조배숙·조지연·송석준

장동혁 • 유상범 • 박충권

곽규택 • 신동욱 • 김은혜

박준태 의원(10인)

제안이유

"N번방 사건", "딥페이크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해외 서버를 통해 사이버 공간 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소재한 전 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한 국가 간의 다자협약인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일명 "부다페스트 협약")」(2004년 발효)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음.

위 협약은 제16조, 제17조에서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하는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이행입법으로서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검사는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정보 중 관련 부분을 한정하여 60일 간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안 제215조의2제1항).
- 나.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보전요청서를 받아 보전을 요청하거나, 증거의 멸실이 임박하여 보전요청서를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때에는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을 할 수 있음(안제215조의2제2항 및 제3항).
- 다.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보전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와 목록을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15조의2제5항).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5조의2(보전요청 등) ① 검사는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관련된 부분을 한정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정보가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서면(이하 "보전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보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보전요청서를 발부받아 제1항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하거나 보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이 임박하여 제2항에 따라 보전요청서를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때에는 직권으로 제1항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전을 서

면(이하 "긴급보전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요 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당해 정보가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고, 정보를 보전한 경우 그 목록을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당해 정보에 관해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전기간 내보전 대상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이 집행되지 않거나 보전요청이 취소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제하고, 그해제사실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서 또는 긴급보전요청서를 직접 제시·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 송부하는 방법으로 보전요청을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전요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사실 및 보전된 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15조의2(보전요청 등) ① 검사
	는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
	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관련된 부분을 한정하여 60
	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정보가
	<u>삭제·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할</u>
	것을 서면(이하 "보전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
	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보전의 연장을 요청
	<u>할 수 있다.</u>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
	여 보전요청서를 발부받아 제1
	항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하거나 보전의 연장을 요청

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이 임박하여 제2항에 따라 보전요 청서를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때에는 직권으로 제1항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전을 서면(이하 "긴급보전요청서"라 한다)으로 요청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당해 정보가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조치 결과를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고, 정보를 보전한 경우 그 목록을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당해 정 보에 관해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전기간 내 보전 대상 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 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포함한 다)이 집행되지 않거나 보전요 청이 취소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제하고, 그 해제사실 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8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 청서 또는 긴급보전요청서를 직 접 제시·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 송부하는 방법으로 보전요청을 할 수 있 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 전요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 다.
- 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

<u>스 제공자는 그 사실 및 보전된</u> <u>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u> <u>는 아니 된다.</u>